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 토 교 통 부



수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경유)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알림

1. 항공시험처-223('15.1.28) 및 항공시험처-333('15.2.9)의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신청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항공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검토결과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강경훈 항공사무관 이종성 행정사무관 대결 2015. 2. 9. 과장 전결
하재범

협조자

시행 항공자격과-477 (2015. 2. 9.) 접수 항공시험처-343 (2015. 2. 10.)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층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311 팩스번호 044-201-5632 / kkhatc32@molit.go.kr / 비공개(7)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 · 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생략) 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응시자격부여”란 비행장치 자격증명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응시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실기시험위원”이란 자격증명 실기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공단이사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제1절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제1절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제5조(자격증명시험의 공고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시험의 공고 방법 및 절차는 <u>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u> (이하 “시험요령”이라 한다)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자격증명시험의 공고 등) ②----- ----- <u>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u> ----- ----- -----.

<p>제6조(비행자격증명의 종류 등) 비행장치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6조(비행자격증명의 종류 등)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인력활공기조종자</u></p> <p>9. <u>낙하산류강하자</u></p>
<p>제7조(시험의 응시기준 및 면제기준)</p> <p>① <u>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응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u>교육을</u>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p> <p>2. (생략)</p> <p>3.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정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총재가 발행한 비행장치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종류의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인 <u>자는</u>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p>	<p>제7조(업무범위·응시 및 면제기준 등)</p> <p>① <u>제6조의 자격증명의 종류별 업무범위 및 응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1.-----</p> <p>-----<u>교육과정을 이수한</u> 사람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p> <p>2. (현행과 같음)</p> <p>3.-----</p> <p>-----<u>사람은</u>-----.</p>

<p>2.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가 매 비행시간마다 서명날인 한 비행시간</p> <p>3.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관리를 허가받는 비영리법인의 장이 서명날인 한 비행시간</p>	<p>2.----- ---매 비행시간 또는 강하마다 지도조종자(지도강하자)가 확인하여 서명날인 한 비행시간 또는 강하횟수</p> <p>3.----- ----- ----- 증명한 시간</p>
<p>제9조의2(지도조종자 기준 등)</p> <p>① (생 략)</p> <p>②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및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지도조종자의 자격을 충족하는 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지도조종자 등록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10-1호서식----- ----- ----- -----.</p>
<p>제9조의3(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p> <p>① (생 략)</p> <p>1.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p> <p>2. 비행경력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 하거나 서명 날인한 경우</p> <p>3.~4. (생 략)</p>	<p>제9조의3(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관련법규----- -----</p> <p>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p> <p>3.~4. (현행과 같음)</p>
<p>제10조(비행시간의 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을 증명함에 있어서 그 비행시간은 조종피교육생이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 (교관)와 동승하여 비</p>	<p>제10조(비행시간 또는 강하횟수의 산정)</p> <p>① ----- 비행 또는 강하경력 ----- ----- (낙하산류는 2인승강하</p>

<p>행한 시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무인 비행장치의 비행경력은 단독 또는 지도 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시간에 의하여 산정한다.</p> <p>② (생 략)</p>	<p>자 또는 지도강하자)와 동승하여 비행(강하)한 시간(횟수)에-----</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자격증명서의 교부 등) ① 제3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서(재)교부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3조(자격증명서의 교부 등) ①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자격증명시험-----</p> <p>-----사람이 자격증명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서(재)교부신청서에 제16조의 신체검사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자격증명서의 취소)</p> <p>① (생 략)</p> <p>1. 허위사실의 제반서류(경력증명, 비행경력 또는 로그북 등 포함)를 제출하여 발급한 자격증명</p> <p>2. 자격증명이 부정행위로 발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제3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 공단이사장은 청문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p>	<p>제15조(자격증명서의 취소)</p> <p>① (현행과 같음)</p> <p>1. 허위로 증명서류(경력증명, 비행·강하경력 또는 로그북 등)-----</p> <p>-----받은 -----</p> <p>2. 부정행위로 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공단이사장은 제3항의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p> <p>-----.</p> <p>⑤ -----이 자격증명을 취소하</p>

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명의 취소와 청문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비행장치조종자 신체조건) ① 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장치를 조종하는데 있어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시험문제관리

제17조(출제의뢰) ① 공단 이사장은 해당분야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172조 및 제182조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시험문제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였을 때에는-----

-----.

제16조 (비행장치조종자 신체검사) 비행장치 조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체검사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의 제2종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2.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

제2절 시험문제관리

제17조(출제의뢰) ①-----

-----2년 -----
-관계 법규에-----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학과시험출제위원 -----.

1. 공무원 중 항공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u>항공분야 전문지식을 소지한 사람</u>	1.----- ----- <u>해당분야에</u> <u>지식을 갖춘</u>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u>항공분야 전문지식을 소지한 사람</u>	2.----- ----- ----- <u>해</u> <u>당분야에</u> ----- <u>갖춘</u> ----
3. 항공분야에서 10년 이상 항공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u>항공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3.----- ----- <u>해당</u> ----- -----.
4. <u>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로서 항공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4. <u>공단에 지도조종자(지도강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해당</u> ----- -----.
5. <u>공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시험 또는 인증검사 전문인력으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u>	5. <u>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장치 자격증명시험 또는 인증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이사장은 위촉된 출제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이 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할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출제위원에게는 시험과목과 출제문제 수 및 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출제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시험과목, 출제문제수, 문제 제출기일 등을 출제위원에게 알려주고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야	<삭제>

한다.

제19조(문제의 관리·검토) ① 각 분야별 출제위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시험문제와 시험문제 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이하 “문제관리용 컴퓨터”라 한다)는 공단 이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은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출제에 부적합한 문제의 원안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문제의 적합여부 검토는 총괄책임자의 감독 하에 공단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출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문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선정 및 인쇄) ①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를 선정할 사람(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문제의 관리·검토) ① 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출제위원이 -----

-----잠금장치가 있는 격리된 장소-----
-----.

② -----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를 검토하고-----
-----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시험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검토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검토는 공단 내 격리된 장소에서 총괄책임자의 감독 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보관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선정 및 인쇄) ① ----- 시험문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p>② (생 략)</p> <p>③ <u>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문제를 인쇄할 때에는 통제구역 내에서 인쇄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각 시험장 전산시스템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선정된 문제를 전송하여야 한다.</u></p> <p>④ 시험문제의 선정과 인쇄 또는 전송작업은 동일한 장소에서 일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u>공단 이사장은 전산시스템의 비정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제3절 학과시험관리</p> <p>제22조(시험안내) 공단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의 종류별, 응시자격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안내서를 작성 배포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자로부터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u>이를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u></p> <p>제23조(응시원서의 접수)</p> <p>①~② (생 략)</p> <p>제24조(응시원서의 처리) ① <u>공단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선정위원이 선정한 문제를</u>-----</p> <p>-----</p> <p>-----</p> <p>-----</p> <p>-----</p> <p>-----</p> <p>-----.</p> <p>④-----</p> <p>-----</p> <p>-----<u>전산시스템의</u></p> <p>-----.</p> <p>제3절 학과시험관리</p> <p>제22조(시험안내) -----</p> <p>-----</p> <p>-----</p> <p>-----</p> <p>-----</p> <p>-----</p> <p>-----</p> <p><u>설명하여야 한다.</u></p> <p>제23조(응시원서의 접수 <u>및 보관</u>)</p> <p>①~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응시원서의 처리) <u>공단이사장은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응시</u></p>
---	---

<p>응시원서에 대하여 기재사항의 적격 여부 및 응시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적격 여부 및 응시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표를 응시자 본인이 직접 출력·사용할 수 있다.</p>	<p>원서의 기재사항과 응시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취선에 접수인을 날인, 절취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표를 응시자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6조(준수사항) 공단이사장은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담당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하며, 세부 임무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p> <p>1. 총괄책임자</p> <p>가. 시험 진행 업무총괄</p> <p>나. 담당자 배치 및 보안관리</p> <p>다. 비정상 상황(신분증 미소지자, 지각자, 시스템고장 등) 발생시 조치</p> <p>라. <삭 제></p> <p>2. (생 략)</p> <p>3. (생 략)</p> <p>4. (생 략)</p>	<p>제26조(준수사항)-----</p> <p>-----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임무를 수행 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1. -----</p> <p>가. -----</p> <p>나. -----</p> <p>다. ----- 발생 시 조치</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제27조(시험시간) 학과시험 실시시간은 5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이</p>	<p>제27조(시험시간) ----- 시간은 -----하되, -----</p>

사장은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절 실기시험관리

제35조(실기시험응시기준) ①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제34조의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별표 1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시험 응시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비행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6조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증명서(병원급에서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검사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실기시험위원) ① 공단이사장은 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인 사람 중에서 비행장치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 설>

---이-----

-----.

제4절 실기시험관리

제35조(실기시험응시기준) ①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기준에 따른 경력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비행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6조의 신체검사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자격 부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 ---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춘 사람을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공단에 등록된 해당 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5년

<p>② (생 략)</p> <p>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위촉실기시험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실기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의한 실시시험위원이 제9조의3에 따라 지도조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을 해지하여야 한다.</p> <p>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해 구술 또는 필기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심사의 내용과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매 2</p>	<p>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p> <p>2.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p> <p>3. 관련 법규 및 해당 비행장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평가업무수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0-3호서식의 실기시험위원위촉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위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10-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위촉실기시험위원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실기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p> <p><삭 제></p>
--	--

<p>년마다 공단이사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⑦ 공단이사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시험요령 제4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위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 신 설 ></p> <p>< 신 설 ></p>	<p><삭 제></p> <p>제36조의2(실기시험위원의 교육 및 심사)</p> <p>①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의 기능유지를 위해 매 2년마다 직무교육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의 교육 및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심사의 내용과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36조의3(실기시험위원의 해촉 등) ①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시험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실기시험위원이 제36조2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p> <p>2. 실기시험위원이 제9조의3에 따라 지도조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p> <p>3. 시험요령 제42조의2 각호의 어느</p>
--	--

	<p><u>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② <u>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을 해촉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③ <u>해촉된 실기시험위원이 다시 재위촉 받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u></p>
<p>제37조(실기시험 <u>장비 준비 등</u>) 실기시험에 필요한 <u>장비 등 제반사항 일체</u>에 대하여는 신청한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한다.</p> <p>② <<u>신 설</u>></p>	<p>제37조(실기시험 <u>준비 등</u>) ①----- ----- <u>제반 장비 등은 실기시험을</u> -----.</p> <p>② <u>공단이사장은 자격증명의 종류별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 및 기타 실기시험 준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단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응시자로부터 실기시험 준비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u></p>
<p>제38조(실기시험의 방법) ① 실기시험에 <u>필요한 사항은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u></p> <p>② 실기시험은 자격별 기능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u>초경량비행장치</u>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력비행장치의 경우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회전익비행장치의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로 실기할 수 있다.</p>	<p>제38조(실기시험의 방법) ① -----은 ----- <u>시행</u>-----.</p> <p>②----- -----<u>비행장치</u>로----- -----<u>다만</u>,----- ----- ----- -----.</p>

<p>③ (생 략)</p> <p>④ (생 략)</p> <p>⑤ <u>실기시험의 실시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p> <p>⑥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실기시험 시간은-----</u> -----<u>하며,</u>-----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40조(신청 및 채점표) ① <u>실기시험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의한다.</u></p> <p>② <u>실기시험 채점은 별지 제9-1호 서식부터 별지 제9-7호 서식까지 해당 자격증명별 실기시험채점표상에 A, B, C 및 D에 의한 등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u></p>	<p>제40조(신청 및 채점표) ① <u>응시자가 실기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u></p> <p>② <u>자격증명별 실기시험 채점표는 별지 제9-1호 서식 내지 별지 제9-9호 서식에 따른다.</u></p>
<p>제41조(합격자의 결정 및 발표) ① <u>실기시험의 합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기시험채점표에 의한 실기시험결과가 실기시험위원별로 모든 항목이 “C”등급 이상이어야 한다.</u></p> <p>② (생 략)</p>	<p>제41조(합격자의 결정 및 발표) ① -----<u>제40조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채점표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어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절 보 칙</p>	<p>제5절 보 칙</p>
<p>제43조(외국인의 시험) <u>외국인이 시험</u></p>	<p>제43조(외국인의 시험) <u>공단이사장은</u></p>

<p>에 응시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시험에 필요한 통역을 위하여 통역자를 동반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통역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외국인이 통역자를 동반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반자를 통역자로 지정하거나, 그 동반자가 통역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통역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p>
<p>제44조(비밀보전) ① 시험관리종사자는 총괄책임자의 허락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p> <p>② 시험관리종사자는 시험관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제44조(비밀보전) ①----- -----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시험업무 수행과정 ----- -----.</p>
<p>제44조의2(합격결정의 이의신청 등) ①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한다.</p>	<p>제44조의2(합격결정의 이의신청 등) ① ----- ----- ----- ----- ----- -----이의신청을-----.</p>
<p>제3장 수수료 등</p>	<p>제3장 수수료 등</p>
<p>제45조(수수료) ① (생 략)</p> <p>② 수수료 및 실비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1. 수수료 및 실비를 과오납한 경우에</p>	<p>제45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수료----- -----같으며, ----- -----.</p> <p>1. 수수료를-----</p>

<p>는 과오납한 금액분</p> <p>2.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u>수수료 및 실비 전액</u></p> <p>3. 응시자가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u>수수료 및 실비 전액</u></p> <p>4. (생략)</p> <p>제46조(수당 등) 자격증명시험에 관한 각종 수당은 공단규정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 및 “여비규정”을 준용한다.</p> <p>부 칙</p> <p><신 설></p> <p><신 설></p>	<p>-----</p> <p>2. -----</p> <p>----- <u>수수료</u> -----</p> <p>-----</p> <p>3.-----</p> <p>----- <u>수수료</u> -----</p> <p>-----</p> <p>4. (현행과 같음)</p> <p>제46조(수당 등) -----</p> <p><u>수당은</u> -----</p> <p>-----</p> <p>·.</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 받는 사람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총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 발급한 인력활공기 또는 낙하산류 자격증명을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한다.</p>
---	---

[별표 1] <개정 2009.6.30, 2013.6.7, 2013.10.22>

초경량비행장치 자격별 업무범위 및 응시기준

종류별	업무범위		응시기준
공 통	조종자	비행장치의 조종	1. 14세(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는 20세) 이상인 사람 2. 제16조의 신체검사증명서
동력비행장치	조종자	동력비행장치의 조종	1. 해당 종류의 동력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비행기에 한함)에 탑승하여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2. 자가용, 사업용,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종류의 동력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비행기에 한함)에 탑승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
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의 조종	1. 해당 종류의 회전익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경량헬리콥터에 한함)에 탑승하여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2. 자가용, 사업용,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종류의 동력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회전익비행장치에 한함)에 탑승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
유인자유기구	조종자	유인자유기구의 조종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자유기구의 비행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 무인비행선	조종자	해당 비행장치의 조종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의 비행 또는 조종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인력활공기	2인승 조종자	1. 해당 종류 비행장치의 조종 2. 해당 종류 비행장치의 체험 및 경관조망 비행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비행경력을 포함한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 총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낙하산류	2인승 강하자	1. 체험 및 경관조망 비행 2. 교육 및 훈련	최근 1년 기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하여 총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을 갖춘 사람(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이상)

지도조종자 자격기준

종류별	업무범위		응시기준
공 통	지도 조종자 (지도강하자)	비행시간 확인 및 교육훈련	1. 20세 이상인 사람 2. 해당 비행장치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동력비행장치	지도 조종자	1. 비행시간 확인 2. 동력비행장치 의 조종교육	동력비행장치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 (항공기 종류 중 비행기 피스톤 엔진의 육상단 발 비행시간 100시간 인정가능)
회전익비행장치	지도 조종자	1. 비행시간 확인 2. 회전익비행장치 의 조종교육	회전익비행장치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 (항공기 종류 중 회전익항공기 비행시간 100시간 인정가능)
유인자유기구	지도 조종자	1. 비행시간 확인 2. 유인자유기구 의 조종교육	유인자유기구의 비행시간이 70시간 이상인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지도 조종자	1. 비행시간 확인 2. 해당 비행장치 의 조종교육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의 비행 또는 조종한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
인력활공기	지도 조종자	1. 해당 종류 비행장치 의 비행시간 확인 2. 해당 종류 비행 장치의 교육 및 훈 련(2인승조종자의 업 무 범위를 포함한다)	1. 해당 종류 비행장치의 비행시간이 200시 간 이상인 사람 2. 2인승조종자 자격을 갖춘 후 1년이 경과 된 사람(행글라이더는 제외한다)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낙하산류	지도 강하자	1. 낙하횟수 확인 2. 2인승강하자의 심 사(2인승조종자의 업 무 범위를 포함한다)	1. 2인승 강하자 자격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2. 2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을 갖춘 사 람(사각 낙하산의 경우 500회 이상)

[별표 2] <개정 2009.6.30, 2013.6.7>

시험과목 및 범위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학과시험

종류별	과 목	범 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3.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4. 예보, 특보 등 기상경보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해당 비행장치 이·착륙에 관한 사항 5.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해당 비행장치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선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해당 비행장치 이·착륙에 관한 사항 5.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해당 비행장치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인력활공기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이착륙 조작에 관한 사항 4.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5. 지상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지에 관한 사항 6.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해당 비행장치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낙하산류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낙하산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낙하산의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2. 낙하산의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5. 지상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지에 관한 사항 3. 동승자 안전에 관한 사항 5. 구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4. 해당 비행장치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실기시험

종 류 별	구 분	범 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선	구술시험	1. 해당 비행장치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4.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인력활공기	구술시험	1. 기상 및 비행공역에 관한 사항 2. 일반지식 및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3. 응급조치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 전 점검 2.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4. 착륙자세 및 장비관리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낙하산류	구술시험	1. 기상 및 비행공역에 관한 사항 2. 낙하산의 종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응급조치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 전 점검 2. 낙하산의 공중조작 및 강하자세 3. 착륙자세 및 낙하산 관리 4. 비행 후 점검 5.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기 재 요 령

1. *표란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2.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3. ③항의 주소는 실 거주지를 한글로 표기하되, 번지, 통반, 우편번호까지 써야 합니다.
4. ④~⑦항은 해당란에 표시(√) 또는 기재 하여야 합니다.
5. ⑧항은 응시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자격명을 써야 합니다.
6. 수수료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업무 운영세칙 제45조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소정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일단 제출된 응시원서, 제출서류 및 수수료는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 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학과시험 수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소요되는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등) 및 계산기 이외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실기시험 장소에는 실기시험에 필요한 용구를 휴대할 수 있으나 감독요원 또는 실기시험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시작 30분전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지필 시험의 경우**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한 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란 외에 기입하거나 줄을 긋거나 기타 여하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주관식의 경우는 기타 필기도구 사용 가능).
7.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수험장 내에서는 흡연, 시험관련 담화, 물품대여 등을 일체 금합니다.
8. 부정행위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즉각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부정행위자는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9. 기타 자세한 것은 감독요원 또는 실기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시험의 연기 및 일자조정은 불가능 합니다.

비행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07.01.01)
3.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착륙회수를 기재합니다.
4. ③항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로 구분), 형식, 신고번호 및 초경량비행장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5. ④항 비행경로에서 FROM은 이륙 출발지, TO은 착륙지를 기재합니다
6. ⑤항 비행시간
 - FROM : 엔진을 시동한 시간(시간 : 분)
 - TO : 엔진을 정지한 시간(시간 : 분)
 - 비행시간(hrs) : 비행을 목적으로 엔진을 시동한 후부터 정지시까지의 시간을 시(HOUR)단위로 기재
7. ⑥항 비행임무별 비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장시간 : 단독 비행시간(solo time), 초경량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직접 조종한 시간
 - 훈련시간 : 교관 또는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시간
 - 교관시간 : 교육을 위해 해당 종류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동승하여 비행 교육을 행한 시간
8. ⑦항은 비행목적 또는 훈련내용을 기재합니다.
9. ⑧항은 지도조종자로부터 비행훈련을 받은 경우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 의 사 항

1. 초경량비행장치 최종인증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비행장치로 행한 비행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비행임무별 비행시간 중 훈련시간은 지도조종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만 비행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심사)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illegible]

비행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07.01.01)
3.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비행횟수를 기재합니다.
4. ③항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종류(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로 구분), 형식, 신고번호 및 초경량비행장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5. ④항 비행장소와 GPS 기록을 기준으로 각 비행마다 3개의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최대직선거리의 총 길이를 기재합니다.
6. ⑤항 비행시간은 이륙시간과 착지시간 그리고 총 비행시간을 기재합니다.
 - 이륙시간 : 이륙을 위해 도움 달리기를 시작한 시간)
 - 착지시간 : 두 발이 지면에 착지한 시간
7. ⑥항 비행임무별 비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시간 : 단독 비행시간(solo time), 초경량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직접 조종한 시간
 - 훈련시간 :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시간
 - 교관시간 : 교육을 위해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에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8. ⑦항은 비행목적 또는 훈련내용을 기재합니다.
9. ⑧항은 2인승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로부터 비행훈련을 받은 경우 2인승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 의 사 항

1. 최종인증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비행장치로 행한 비행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무별 비행시간은 2인승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만 비행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심사)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성명: 2. 소속: 3.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4.연락처:

[illegible]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하경력**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 . . 발급기관명/주소 발급자 (인) 전화번호:

강하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07.01.01)
3.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강하회수를 기재합니다.
4. ③항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종류(2인승 낙하산, 사각낙하산 등), 형식, 신고번호 및 초경량비행장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5. ④항은 강하장소를 기재합니다.
6. ⑤항은 강하의 종류(교관도움개방강하, 2인승강하, 속성자유강하 등)를 기재합니다.
7. ⑥항은 다음과 같이 임무별 강하회수를 기재합니다.
 - 단독 : 해당 종류의 낙하산으로 혼자 강하한 횟수
 - 훈련 : 교관, 2인승강하자 또는 지도강하자에 의한 훈련 목적의 강하 횟수
 - 교관 : 교육을 위해 해당 종류의 낙하산에 동승하여 강하한 횟수
8. ⑦항은 강하목적 또는 훈련내용을 기재합니다.
9. ⑧항은 2인승강하자 또는 지도강하자로부터 강하훈련을 받은 경우 2인승강하자 또는 지도강하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 의 사 항

1. 최종인증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비행장치로 행한 비행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무별 강하횟수는 2인승강하자 또는 지도강하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만 강하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심사)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illegi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국문양식)

(앞 쪽)

I. 대한민국				
사진 (2.5×3cm)	II. 자 격 명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III. 자격번호			
	IV. 성 명			
	IVa. 생년월일	년	월	일
	V. 주 소			
	VI. 국 적			
X. 교 부 일	년	월	일	
IX.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VIII. 교통안전공단이사장		XI.	직인	

(뒤 쪽)

XII. 한정사항(비행장치 종류)	
XIII 특기사항	
- 제한사항	
VII. 소지자 서명:	

86㎜×54㎜(PVC 카드)

(영문 발급 양식)

(앞 쪽)

I. REPUBLIC OF KOREA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사 진 (2.5×3cm)</div>	II. TITLE OF LICENCE : ULTRA LIGHT VEHICLE
	III. SERIAL NO. OF THE LICENCE :
	IV. NAME:
	IVa. DATE OF BIRTH:
	V. ADDRESS:
	VI. NATIONALITY:
X. DATE OF ISSUE:	
IX. THIS LICENCE HOLDER HAS BEEN FOUND TO BE PROPERLY QUALIFIED TO EXERCISE THE PRIVILEGES OF THE LICENCE IN ACCORDANCE WITH AVIATION ACT.	
VII. CHAIRMAN OF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XI.	

(뒤 쪽)

XII. RATINGS(KIND OF VEHICLE)
XIII. REMARKS - LIMITATIONS:
VII. SIGNATURE OF HOLDER:

86mm×54mm (PVC 카드)

[별지 제5호서식]

사진 (2.5×3.5cm)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서 교부대장							
	① 자 격 종 류		② 자 격 번 호		③ 교 부 일 자			
	④ 성 명	한 글						
영 문								
⑤ 주민등록번호								
⑥ 성 별								
⑦ 국 적								
⑧ 주 소								
⑨ 자격증명 취득사항								
자 격 종 류		교부일자		근 거		확인일자		확인
⑪ 무 효 사 항								
무 효 사 유		무효내용		근거		무효일자		확인
⑫ 행정처분사항								
처분기관	처분근거	처분일자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원인	확인일자		확인
⑬ 기 타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7.11.27>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6.30>

[별지 제8호서식]

시험지(답안지) 인계·인수서

다음과 같이 200 년도 차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 시험지(답안지)를 인계·인수합니다.

종 목 :

매 수 :

인계인수일시 : 201 년 월 일 시 분

인 계 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인 수 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내역

종 목	답 안 지 매 수	시 험 지 매 수	비 고	종 목	답 안 지 매 수	시 험 지 매 수	비 고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비행장치)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5	점검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실기시험(지상활주)		
7	직진활주	
8	고속활주	
실기시험(이륙조작)		
9	정품 및 측품 이륙	
10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상승 및 하강비행	
12	직진수평비행	
13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14	실속회복	
15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17	복행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착륙 후 점검	
19	기체의 주기와 안전 확보	
20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실기시험위원 : _____ 자격번호 : _____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회전익비행장치)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5	점검 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7	지상활주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과 상승)		
9	정상 및 측풍이륙	
10	롤링 이륙	
11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2	상승 및 하강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선회비행	
15	정지비행	
16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7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18	직진 오토로테이션 착륙	
19	복행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20	착륙 후 점검	
21	기체의 주기와 안전확보	
22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3	계획성	
24	판단력	
25	규칙의 준수	
26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실기시험위원 : _____ 자격번호 : _____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유인자유기구)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하중 산출 및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준비)		
5	장비 전개 및 검사	
6	지상요원 BRIEFING	
7	INFLATION	
실기시험(이륙과 상승)		
9	이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10	이륙	
11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륙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2	비행조종 능력	
13	항법	
14	연료의 운영	
15	비상시 대책 및 절차 수행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착륙지 선정, 진입, 통과	
17	착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18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9	비행 후 점검	
20	기체의 정리	
21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2	계획성	
23	판단력	
24	규칙의 준수	
25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실기시험위원 : _____ 자격번호 : _____

[별지 제9-4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패러글라이더)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 험 일 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준비)					
5	비행 전 점검				
6	발동기의 시동				
7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조작)					
8	정풍 및 측풍이륙				
9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포기				
실기시험(비행조작)					
10	비행조작				
11	로패스(LOW PASS)				
12	슬라롬(SLALOM)				
13	터치 앤 고(TOUCH AND GO)				
실기시험(착륙조작)					
14	착륙조작				
15	비상조치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6	비행 후 점검	
17	기체의 정리	
18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19	계획성	
20	판단력	
21	규칙의 준수	
22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실기시험위원 :

자격번호 :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비행기)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5	점검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실기시험(지상활주)		
7	직진활주	
8	고속활주	
실기시험(이륙조작)		
9	정상이륙	
10	촉퐁이륙	

11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2	상승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15	실속회복 및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정상접근 및 착륙	
17	촉공접근 및 착륙	
18	복행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9	비행 후 점검	
20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실기시험위원 : _____ 자격번호 : _____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회전익비행장치)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5	비행 전 점검	
6	발동기의 시동	
7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과 상승)		
8	이륙비행	
9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0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11	상승 및 하강비행	
12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13	좌우 수평비행	
14	원주비행(러더턴)	
15	비상조작	
16	안전거리 유지	
실기시험(착륙조작)		
17	정상접근 및 착륙	
18	촉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9	비행 후 점검	
20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실기시험위원 : _____ 자격번호 : _____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비행선)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풍향 및 풍속에 관련한 사항	
5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발동기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과 상승)		
9	이륙 및 상승	
10	비상상황 발생시 이륙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정지비행	
12	상승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표준 및 선회비행	
15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정상접근 및 착륙	
17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실기시험위원 : _____ 자격번호 : _____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인력활공기)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기상의 이해에 관한 사항	
3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5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7	비행 전 장비 점검	
8	이륙 전 점검사항	
실기시험(이륙)		
9	이륙	
10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상승비행	
12	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13	표준 및 선회비행	
14	활공자세	
15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	
16	긴급 하강법	

실기시험(착륙조작)		
17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실기시험위원 : _____ 자격번호 : _____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낙하산류)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낙하산	용 종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2인승 자유강하 기초 원리	
2	2인승 강하 낙하산류 구조와 기능	
3	공역제한 및 금지행위	
4	강하관련 기상	
5	강하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강하 전 - 지상 절차)		
6	강하계획 및 사전 점검	
7	낙하산류 및 기타 관련 장비 상태점검	
8	착지 예정 장소 점검	
9	강하 중 탑승객의 행동절차에 대한 교육	
실기시험(강하 전 - 비행 중 절차)		
10	탑승객 하네스 결합자세, 순서 및 견고성 확인	
11	탑승객 긴장해소를 위한 소통방법	
12	항공기 이탈 시기 및 자세 연습	
13	다른 강하자와의 강하절차 숙지 상태 확인	
14	기능고장 대응절차 연습	
실기시험(자유 강하 중 절차)		

15	안정된 항공기 이탈 및 자세 유지	
16	안정된 자유강하 자세유지 상태에서 드로우그(Drogue) 개방	
17	드로우그(Drogue) 개방 후 장비검사	
18	비 정상 자유강하 자세(스핀/롤)의 회복 능력	
19	정확한 낙하산 개방자세 유지 및 고도준수	
실기시험(낙하산 산개 후 절차)		
20	낙하산 산개 검사	
21	착지지점 및 풍향·풍속 확인	
22	탑승객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및 탑승객 하네스 이완	
23	안정된 낙하산 조종	
24	안정된 착지	
실기시험(착지 후 절차)		
25	탑승자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26	강하관련 특이사항 질의·응답	
27	낙하산 회수 및 포장	
실기시험(종합능력)		
28	계획성	
29	판단력	
30	규정의 준수	
31	낙하산 및 소요장비 취급의 적절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실기시험위원 :

자격번호 :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영문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집전화	
	주소 :		휴대폰	
			E-Mail	
소 속				
총 비행시간(횟수) ()	일반항공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시간(횟수)		지도조종자(지도강하자)()	
			기타()	
초경량비행장 치종류	☐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 동력패러글라이더 ☐ 무인비행기 ☐ 무인회전익비행장치 ☐ 무인비행선 ☐ 인력활공기 ☐ 낙하산류			
교육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종류(형식)				
서 명	※ 피교육자의 로그북에 사용하는 서명을 굵은 싸인펜으로 아래에 서명하세요			
<p>아래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서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4 제2항 제1호의 가목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9조 <p>※ 첨부서류 : 비행경력증명서</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일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p>				

[별지 제10-2호서식] <신 설 2007.11.27>

지도조종자 등록대장

[illegible]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소속						
연락처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번호		발급일자	
	자격증명		번호		발급일자	
최근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신청분야						
<p>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 받고자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p>						
<p>구비서류</p> <p>- 비행(강하)경력증명서 1부</p>						

위촉장

성명 :

생년월일 :

위촉분야 : (해당 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를 (해당 분야)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환 불 신 청 서

			담 당	처 장
응시시험명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접수금액		환불금액		
환불신청사유				
송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200년도 ()차 () 시험(심사) 중 (필기(학과), 기능(실기))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본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일 :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본인의 신분증 우편 및 팩스 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